

## 행위자 원인은 행위자의 통제력에 도움을 주는가?<sup>\* † ‡</sup>

홍 지 호

**【요약문】** 이 논문에서 나는 오코너의 행위자 원인론에 대해 고찰한다. 그 이론에 따르면, 행위자 원인 사건에 호소하지 않을 경우, 의도나 행위에 대해 행위자가 가지는 통제력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행위자 원인 사건은 행위자의 통제력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위해 나는 이유 반응성이 행위자의 통제력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것을 보인다. 행위자 원인 사건이 행위자의 통제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유 반응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행위자 원인 사건은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나는 이러한 이유로 행위자 원인 사건은 행위자의 통제력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

**【주요어】** 오코너, 행위자 원인론, 행위자의 통제력, 행위자 원인 사건, 이유 반응 조건

\* 접수완료 : 2010. 1. 21 심사 및 수정완료 : 2010. 2. 12

† 이 논문은 200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KRF-2007-327-A00242).

‡ 이 논문의 초고는 2009년 10월 24일 한국분석철학회 가을 정기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되었다. 당시 논평을 해주신 신상규 선생님과 많은 조언을 해주신 김세화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이 논문을 심사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도 감사드린다.

## 1. 도입

어떤 행위자 A가 어떤 행위 b를 행했다고 해보자. 만일 A가 b의 원인이 아니라면, b는 A의 자유로운 행위가 아니고 A는 b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원인이라는 생각 즉, 행위자 원인(agent causes) 또는 행위자 인과관계(agent causation)에 관한 믿음은 이렇게 행위자의 자유나 도덕적 책임에 관한 믿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러한 연관성은 ‘통제(control)’라는 개념을 통해 다시 얘기될 수 있다. A가 b의 발생을 통제할 수 없었다면, A가 b를 행했다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행한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우리는 b의 발생에 대해 A에게 도덕적 책임을 귀속시킬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통제는 인과적 개념이다. 즉, A가 b의 원인이 아니라면, A는 b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원인이라는 것은 행위자의 자유나 도덕적 책임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위자의 자유나 도덕적 책임에 대한 믿음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원인에 대한 믿음을 적절하게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인과적 행위론(causal theory of action)을 건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위와 같은 행위자 원인에 대한 믿음을 사건 원인 차원에서 해명하려 한다.<sup>1)</sup> 그들에 따르면, A가 b의 원인이라는 것

---

1) 기본적으로 인과적 결정론과 자유가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양립가능론자들(compatibilists)은 이러한 노선을 견지한다. 뿐만 아니라, 양립불가능적 자유론(incompatibilist libertarianism)의 입장을 고수하는 케인(R. Kane)도 사건 원인 차원에서 행위자의 통제력을 확보하려고 시도한다. 그는 행위자 원인론의 동기가 되는 생각 즉, 비결정론을 수용할 경우 무작위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생각을 부정하려 시도한다. 물론 행위자 원인을 도입하지 않고

은, A의 정신적 사건(예를 들어, b와 관련된 믿음과 욕구)이 b의 원인이고, A는 그러한 정신적 사건의 소유자라는 것을 통해 해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을 가지고는 행위자에게 b에 대한 통제력을 귀속시킬 수 없고, 따라서 자유나 도덕적 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예로 치즘(R. Chisholm), 오코너(T. O'Connor), 클락(R. Clarke) 등의 행위자 원인론자들(agent causalists)을 들 수 있다.<sup>2)</sup>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논변을 통해 드러낼 수 있다.<sup>3)</sup>

---

말이다. 이러한 그의 시도는 Kane(1996), Kane(1999)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2) 행위자의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위자 원인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견해는 Chisholm(1964), Clarke(1993), O'Connor(2000a)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3) 이 논변은 결정론과 자유가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결과논변(Consequence Argument)’과 비결정론과 자유가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마인드 논변(Mind Argument)’을 합쳐서 간단히 정리해 놓은 것이다. 다음은 반 인웨겐(P. van Inwagen)의 ‘결과 논변’이 담겨 있는 구절이다. “만일 결정론이 참이라면, 우리의 행동들은 먼 과거의 사건들과 자연법칙들에 따른 결과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다. 그리고 자연법칙들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의 결과들(우리의 행동을 포함하여)은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다.” van Inwagen(1983), p. 16.

여기서 ‘x가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x 외에 다른 것을 행할 수 없다는 것 즉, x에 대해 대안적 가능성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은 반 인웨겐의 ‘마인드 논변’이 담겨 있는 구절이다.

“만일 비결정론이 특정한 행위자가 자유의지를 가지는지의 물음과 관련된다면, 그것은 그 행위자의 행위(또는 아마도 그러한 행위의 직접적인 인과적 선행 사건들)가 비결정적이지 않은 한 자유로운 것일 수 없기 때문이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어떤 행위자의 행위가 비결정적이라면, 그 행위자가 그 특정한 경우에 행위하는 방식은 우연의 문제이다. 그리고 만일 어떤 행위자의 행위 방식이 우연의 문제라면, 그 행위자는 자유의지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van Inwagen(2000), p. 10.

여기서 반 인웨겐은 대안적 가능성을 위해 비결정론을 수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작위적 선택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P1. 행위자의 행위는 인과적으로 결정론적이거나 비결정론적이다.
- P2. 행위자의 행위가 인과적으로 결정론적이라면, 그것에는 대안적 가능성이 없다.
- P3. 행위자의 행위가 인과적으로 비결정론적이라면, 그것은 무작위적이다.
- C1. 행위자의 행위에는 대안적 가능성이 없거나, 그것은 무작위적이다.
- P4. 행위자의 행위에 대안적 가능성이 없다면, 그것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 P5. 행위자의 행위가 무작위적이라면, 그것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 C2. 행위자의 행위는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행위자 원인론자들은 여타의 양립불가론적 자유론자들과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자유를 구하기 위해 인과적 결정론을 부정하고 비결정론을 수용한다.<sup>4)</sup> 즉, P2와 P4를 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대안적 행위의 가능성을 자유나 도덕적 책임의 필요조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딜레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P3나 P5를 부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P5를 부정할 수는 없어 보인다.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P3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아닌 실체로서의 행위자를 원인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행위자 원인론자라 할 수 있다. 그들에 따르면, 행위자 원인을 도입해야만 비결정론을 수용했을 때 발생하는 무작위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위자에게 통제력을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글을 통해 논의해 보려는 것은 위와 같은 기본적인 생각에서 출발하는 오코너의 행위자 원인론이다.<sup>5)</sup> 먼저 오코너의 얘기를 토

---

4) 물론 예외도 있다. 예를 들어, 마코시안(N. Markosian)은 행위자 원인과 결정론이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Markosian(1999), pp. 257~77 참조.

5)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대로 그가 생각하는 행위자 원인론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2장). 그리고 오코너가 얘기하는 행위자 원인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가정할 것이다. 이 글에서 고찰하려는 것은 행위자 원인의 도입이 행위자의 통제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행위자 원인론에 대한 기존의 반론들 중 행위자 원인의 설명력에 관한 반론을 살펴볼 것이다(3장). 이 과정에서 내가 주목하려는 것은 그 반론에 대한 오코너의 대응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그의 대응 방식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행위자 원인 사건과 행위자의 통제 사건이 동일한 것이거나 전자가 후자의 충분조건이어야 한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바로 이점에 주목하면서, 행위자 원인의 도입이 행위자의 통제력 확보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비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4장). 미리 얘기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짓게 될 것이다.

## 2. 오코너의 행위자 원인론

앞서 간략히 언급했던 것처럼, 오코너는 기본적으로 자유와 결정론에 대한 양립불가론의 입장을 받아들인다. 특히, 그는 프랭크퍼트식 사례를 통해 자유나 도덕적 책임과 관련한 대안적 가능성 조건을 거부하려는 시도를 그리 실통치 않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조건을 자유나 도덕적 책임의 필요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그는 인과적 결정론을 가정할 경우 대안적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

---

행위자 원인에 대한 믿음을 정당화하는 것과 행위자 원인을 이론적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행위자 원인을 끌어들이지 않고도 사건 원인 차원에서 행위자 원인에 대한 믿음을 정당화하려 시도할 수도 있다. 오코너의 주장은 그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사건 원인으로 환원될 수 없는 행위자 원인을 이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는 생각도 받아들인다.<sup>6)</sup>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그가 자유로운 행위나 도덕적 책임의 존재를 해명하기 위해 비결정론을 가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러한 가정만으로는 행위자의 자유나 도덕적 책임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앞서 밝혔듯이, 행위자의 자유나 도덕적 책임의 필요조건에는 대안적 가능성도 있지만 행위자의 통제력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sup>7)</sup> 나 또한 이러한 그의 생각에 동의한다. 미래로 열린 길이 다양하다 할지라도 어떤 길을 선택할지가 행위자의 통제 하에 있지 않다면 그 선택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안적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과적 비결정론을 가정하면, 행위자의 통제력에 대해 적절하게 해명할 수 없게 되는 듯이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통제력 확보를 위해 행위자 원인을 도입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행위자 원인을 도입하게 되는 동기는 행위자의 통제력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기를 가지는 오코너의 행위자 원인론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그가 생각하는 인과 관계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간략하게만 살펴보자. 그에 따르면,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원인적 힘은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 덕분에 실행된다. 그 원인적 힘은 그 대상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실행된다. 예를 들어, 던져진 야구공이 창문을 깨뜨리게 되는 인과적 사건은 이렇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야구공은 딱딱함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일정 속도로 날아가서 깨어지기 쉬운 대상(창문)과 부딪히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딱딱함이라는 속성 덕분에 창문을 깨뜨림이라는 결과를 야기한다. 이러한 인과적 사건은 사건들만 가지고 설명될 수 있다. 즉, 창문이 깨어진 그 결

6) O'Connor(2000a), pp. 2~22 참조.

7) O'Connor(2000a), pp. 23~4 참조.

과 사건은 야구공이라는 실체를 끌어들이지 않고도 야구공의 속성과 그것이 처한 상황만을 가지고 법칙적으로(필연적이든 개연적이든)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오코너는 사건들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일반화하여 이렇게 얘기한다. “어떤 대상이 속성 P를 가지고 있는데, 그 대상이 어떤 상황 C에 처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법칙적으로 야기한다.”<sup>8)</sup> 그렇다면, 행위자 인과 관계의 경우는 어떨까? 오코너의 설명을 살펴보자.

행위자 원인론자에 따르면, [사건 원인과는] 다른 종류의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의도적이고 자유로운 행위자의 특징적 활동을 포함한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결과를 산출하는 특수자(particular)란 가능한 행위 과정을 마음속에 그릴 수 있고 그러한 대안들과 관련된 욕구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행위자여야만 한다는 점에 먼저 주목해야 한다. 행위자 원인은 다양한 방식의 ‘행동 실행 의도 상태’를 직접적으로 산출한다.[밀줄은 필자의 강조]<sup>9)</sup>

여기서 물론 ‘[사건 원인과는] 다른 종류의 원인’이란 바로 행위자 원인이다. 오코너의 설명에 따르면, 행위자 원인은 행위자의 자유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리고 행위자 원인은 우리와 같이 욕구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행위자에게나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행위자가 직접적으로 원인적 힘을 발휘하여 산출하는 결과 사건은 바로 ‘행동 실행 의도 상태’라는 그의 견해이다. 그에 따르면, 행위자 인과 관계는 결국 실체로서의 행위자와 정신적 사건으로서의 행동 의도 사이에 성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자 원인 사건 즉, 행위자가 행동 실행 의도 상태를 직접적으로 산출하는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는 것일까?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sup>8)</sup> O'Connor(2000a), pp. 68~71 및 O'Connor(1995), pp. 175~7 참조.

<sup>9)</sup> O'Connor(2000a), pp. 71~2.

이렇게 의도상태를 행위자가 직접적으로 야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식이다. 사건 원인들과 유사하게, 행위자 원인의 그 독특한 힘은 속성 또는 속성들의 집합에 근거한다. 그래서 [행위자 원인과] 관련된 내적 속성들을 가지는 임의의 행위자는 내적이고 외적인 상황에 의해 제한된 범위의 의도 상태들 중 임의의 것을 직접적으로 야기할 힘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들은 인과적 과정에서 [사건 원인의 경우와는] 다르게 기능한다. 이러한 속성들은 ‘상황들에서 결과들로의 함수’와 연합하지 않고, (적절한 상황과 더불어) 행위자가 결과를 산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러한 ‘선택을 가능하게 해주는 속성들(choice-enabling properties)’은 상이한 유형의 인과적 힘 또는 능력의 근거가 된다. 즉, 그 힘은 적합한 상황에서 그 행위자 자신에 의해 자유롭게 실행되는 것이다.[밑줄은 필자의 강조]<sup>10)</sup>

이러한 오코너의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행위자에게는 행위자가 직접적으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속성 즉 ‘선택을 가능하게 해주는 속성들’이 있는데, 그 속성 덕분에 행위자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원인적 힘을 직접적으로 자유롭게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설명을 참이라고 가정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시각  $t_2$ 에 행위자 A는 영화를 보러 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e_2$ ), 시각  $t_3$ 에 영화관으로 향한다( $e_3$ ). 물론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기에 앞서 시각  $t_1$ 에 A는 지난 한 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은 욕구와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게 좋을지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e_1$ ). 사건 원인 차원에서 이러한 일상적인 얘기는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여기서 ‘→’는 인과관계를 의미한다).

$$e_1 \rightarrow e_2 \rightarrow e_3$$

---

<sup>10)</sup> O'Connor(2000a), p. 72.



그러나 오코너는 이런 도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도식을 가지고는 행위자가 인과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사건의 흐름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코너의 생각에 따르면, 위와 같은 A의 행위 과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1 등을 가지고 있는)  $A \rightarrow e2 \rightarrow e3$

이러한 도식 안에서 행위자 원인 사건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음이다.

(e1 등을 가지고 있는)  $A \rightarrow e2$

우리가 오코너와 더불어 비결정론을 가정한다면, A에게는 e2 외에도 가능한 범위 내의 다양한 선택지들(예를 들어, e2', e2'')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자의 자유를 위한 대안적 가능성 조건은 자연스레 충족된다. 그리고 A는 '선택을 가능하게 해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덕분에 그러한 선택지들 중 e2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e2에 대한 A의 선택은, 대안적 가능성 조건뿐만 아니라 통제력 조건도 충족시키고 있는 듯이 보인다. 행위자 A가 e2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결국 행위자 원인을 도입함으로써 비결정론적 세계에 있는 행위자에게 통제력을 귀속시킬 수 있게 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러한 오코너의 생각에 대해 기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행위자 A가 의도 사건 e2를 직접적으로 야기하게 만든 원인은 무엇인가? 행위자 원인 사건 'A → e2'를 실제로 통제하는 것은 바로 그 원인이 아닌가? 그러나 오코너에 따르면

면, 그러한 원인은 없다. 그는 그 근거를 사건들 사이의 인과적 사건과의 비교를 통해 간단하게 설명한다. 예를 들어, 사건들 사이의 인과적 사건 ‘ $e1 \rightarrow e2$ ’를 생각해 보자. 이러한 복합적인 사건을 야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코너에 따르면, 이 사건을 야기하기 위해서는 원인항  $e1$ 을 야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 점에 있어서는 행위자 원인 사건 ‘ $A \rightarrow e2$ ’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을 야기하기 위해서는 원인항  $A$ 를 야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A$ 는 사건이 아니라 행위자로서 실체이다. 실체는 어떤 사건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 $A \rightarrow e2$ ’는 무엇인가에 의해 간접적으로도 야기될 수 없다. ‘ $e1 \rightarrow e2$ ’와 같은 사건들 사이의 인과적 사건과는 달리 행위자 원인 사건에는 원인이 없는 셈이다.<sup>11)</sup> 이러한 행위자 원인 사건의 특성은 앞서 우리가 논의의 출발점에서 살펴보았던 딜레마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듯이 보인다.

만일 행위자 원인 사건 ‘ $A \rightarrow e2$ ’의 원인이 있었다면, 그 원인은 행위자로서의  $A$ 이거나  $e2$  이전에 발생했던 정신적 사건  $e1$ 일 것이다.  $A$ 가 원인이었다면, 우리는 새로운 사건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즉, ‘ $A \rightarrow (A \rightarrow e2)$ ’의 원인은 무엇인지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A$ 를 끌어들이거나 여타의 사건을 끌어들이야 할 것이다. 결국 무한퇴행에 빠지게 된다.<sup>12)</sup> 이제  $e1$ 이 원인이었다고 생각해 보자. 이 경우에는 행위자 원인을 도입하더라도 그 딜레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e1$ 과  $A$ 의 인과적 관계는 결정론적이거나 비결정론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안적 가능성이 사라지거나 무작위적인 것이 되어버려 결국 원래 딜레마로 되돌아가게 된다. 오코너는 ‘ $A \rightarrow$

---

11) O'Connor(1995) p. 186 참조.

12) O'Connor(1995) p. 187 참조.

e2'의 원인이 없다는 것을 통해 즉, 앞선 사건들과의 인과적 단절을 통해, 행위자 A가 e2에 대해 통제력을 가진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행위자 원인을 도입하여 행위자의 통제력을 확보하려 하는 오코너의 행위자 원인론의 대략적인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론에 대해 우리는 다양한 반론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원인 없는 사건의 존재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13)</sup> 오코너가 비결정론을 받아들이고 있긴 하지만, 비결정론이 원인 없는 사건의 존재를 함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가 행위자 원인을 실행할 수 있는 속성을 정말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험적 증거도 없다. 또한 사건 원인으로 환원되지 않는 행위자 원인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은 과학적 세계관과 상충할 수 있는 하향인과를 받아들이게 되는 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sup>14)</sup> 설령 행위자 원인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도, 사건 원인과 행위자 원인이 어떻게 하나의 인간 개체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물음을 제기

---

13) 이 논문의 심사위원 중 한 분은 행위자 원인 사건 'A → e2'의 원인 여부를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말하자면, 복합적인 인과적 사건(그것이 행위자 원인 사건이든 사건들 사이의 인과적 사건이든)의 원인이 무엇인지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내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사건들 사이의 인과적 사건과는 달리 행위자 원인 사건은 앞선 사건들과 인과적으로 단절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내가 이 글에서 문제시하는 것은 행위자 원인 사건 'A → e2'에 원인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드러나겠지만, 내가 주장하려는 것은 그러한 사건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행위자의 통제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14) 실제로 오코너는 행위자 원인을 통해 자유에 대해 해명하는 가운데 심신수반을 부정하면서 하향인과를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리주의 입장에서 이러한 그의 입장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O'Connor(2000b) pp. 105~17 참조.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물음들에 대해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오코너가 제시하는 행위자 원인이 행위자의 통제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 3. 행위 설명에서 행위자 원인의 역할

이제 오코너가 주장하고 있는 행위자 원인 사건이 정말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이러한 가정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행위자의 행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즉, 행위자 원인은 행위자가 ‘왜’ 특정 행위를 하게 되는지에 관해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sup>15)</sup> 이러한 비판은 이 글의 목적상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행위에 대한 설명과 통제력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 행위가 왜 발생했는지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무작위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리고 행위자의 선택이나 행위가 무작위적인 것이라면, 그 선택이나 행위는 행위자를 비롯한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통제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행위자 원인의 도입은 행위자의 통제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듯이 보인다. 이제 다음과 같은 엑스트롬(L. W. Ekstrom)의 얘기를 살펴보자.

행위자 원인론의 해명에는 행위자에 의해 야기된 사건이 왜 여타의 다른 시각이 아니라 그것이 발생한 [바로 그] 시각에 발생했

---

15) 사실 이러한 반론 즉, 행위자 원인의 설명력에 관한 반론은 행위자 원인론에 대한 주된 반론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반론은 Goetz(1988), Ginet(1997), Ekstrom(2000) 등 행위자 원인론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논문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는지에 관해 설명할 방편이 없다. 왜냐하면 행위자에 관한 어떠한 것도, 그가 변화를 겪지 않는 한, 그것이 그 때 발생함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16)</sup> [밑줄은 필자의 강조]

여기서 행위자에게 일어난 ‘변화’란 행위자의 정신적 사건을 비롯하여 우리가 행위자의 행동에 인과적인 영향을 가진다고 간주하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엑스트롬의 얘기는 실체로서의 행위자는 행위 발생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제공하지 못하고, 실제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은 그 행위자에게 발생한 변화 사건 즉, 정신적 사건 등이라는 것이다. 결국 행위자 원인은 행위 설명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게 되고 오히려 정신적 사건 원인이 그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엑스트롬의 반론은 행위자 원인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도 성립할 수 있다. 괴츠(S. Goetz)도 이와 유사한 반론을 제기한다.

만일 행위자가 행위하는 데 가지는 이유들이 그 행위에 대한 그의 자유나 책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그리고 ‘그가 그 행위를 야기함[행위자 원인 사건]’은 오직 그 이유들에 호소함으로써만 설명될 수 있다면, ‘그가 자신의 행위를 야기함[행위자 원인 사건]’은 어떻게 그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자유롭고 책임이 있는지에 관해 설명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sup>17)</sup>

영화관에 가는 행동을 하는 행위자의 예를 가지고 이러한 반론들에 대해 생각해 보자. 행위자 A는 왜 시각 t<sub>2</sub>에 영화관에 가려는 의도를 가지게 되었고(e<sub>2</sub>), 시각 t<sub>3</sub>에 영화관에 가는 행위(e<sub>3</sub>)를 하게 되었을까? 시각 t<sub>3</sub>의 행동은 시각 t<sub>2</sub>의 의도를 가지고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각 t<sub>2</sub>의 그 의도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분명히 행위자 A 그 자체만을 가지고는 설명될 수 없다.

<sup>16)</sup> Ekstrom(2000), pp. 96-9 참조. 인용문은 p. 98의 것이다.

<sup>17)</sup> Goetz(1988), p. 310.

그 설명을 위해서는 시각  $t_1$ 에 행위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사건 즉, ‘지난 한 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은 욕구와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영화관에 가는 게 좋다는 믿음( $e_1$ )’을 끌어들이야 한다. 즉, 행위자 A가  $e_1$ 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e_2$ 를 야기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위자 원인 사건 ‘( $e_1$  등을 가지고 있는)  $A \rightarrow e_2$ ’에서  $e_2$ 의 발생을 설명해 주는 것은 행위자 A가 아니라  $e_1$ 이라 할 수 있다.  $e_2$ 의 발생을 설명하는 데에 A의 역할은 없게 되는 셈이다. 오코너는 이런 반론에 대해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 실제로 오코너도  $e_2$ 를 설명하기 위해  $e_1$ 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코너의 다음 얘기를 살펴보자.

어떤 행위자가 선행하는 자신의 욕구  $\Theta$ 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 때 행위했을 충분조건은,

(1) 이 행위에 앞서, 그 행위자는 욕구  $\Theta$ 를 가졌고 그렇게 행위하면 그 욕구를 충족시킬 것이라 믿었다.

(2) 그 행위자의 행위는 그 자신의 자기-결정 인과적 활동에 의해 (부분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활동의 사건 구성요소는 ‘ $\Theta$ 를 지금 여기서 충족시키기 위해 그렇게 행위하려는 행위 촉발 의도를 가지게 됨’이다.

(3) 이러한 행위와 동시 발생적으로, 그는  $\Theta$ 를 계속해서 욕구했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러한 행위를 의도했다. 그리고,

(4) 그 동시 발생적 의도는 행위자에 의해 야기된 행위 촉발 의도의 직접적인 인과적 결과였다. 그리고 그 의도는 그 행위의 완결을 인과적으로 뒷받침했다.

[밑줄은 필자의 강조]<sup>18)</sup>

18) 이러한 주장은 O'Connor(1995), O'Connor(1996), O'Connor(2000a) 등 행위자 원인에 관한 오코너의 논문들에 일관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는 O'Connor(2000a), p. 86의 것을 인용하였다.

여기서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1)과 (2)이다. (1)은 행위자가 행위 의도를 야기하는 사건 즉, 행위자 원인 사건 발생 이전에 그 의도와 관련된 욕구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2)는 행위자가 야기하는 행위 촉발 의도(행위 실행 의도)에는 바로 그 욕구와 믿음이 반영되어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결국 그는 특정 욕구와 믿음을 통해 행위자의 의도나 행동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이유들(욕구와 믿음)이 없다면, 행위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행위의 의도나 행위를 설명하는 데에 행위자 원인 A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는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그럼에도, 피츠가 주장하듯, 행위자-원인 구조 안에서 이유들의 설명력은 행위자의 능동적 힘의 실행과 독립적이지 않다. 후자[행위자의 능동적 힘의 실행]는 이유와 행동의 필수적인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그것[행위자의 능동적 힘의 실행]이 없다면, 이유는 어떤 중요한 방식으로도 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 ... 통제하는 요인이 없다면, 설명도 있을 수 없다.<sup>19)</sup>[밑줄은 필자의 강조]

이러한 오코너의 이야기에 따르면, 행위자 원인 A는 이유를 통해 행동을 설명하는 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A가 행동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이유와 행동은 서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A가 행동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욕구가 행동을 설명하는 이유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유가 행위를 설명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행위자의 통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행위자 원인은 행동에 대한 설명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 셈이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밑줄 친 부분이다. 거기서 우리는 그가 행위자 원인의

<sup>19)</sup> O'Connor(2000a), pp. 88~9.

설명력에 관해 얘기하면서 행위자 원인과 행위자의 통제력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그러한 동일시에 근거하여 행위자 원인에도 행위에 대한 설명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러한 동일시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오키너가 얘기하는 행위자 원인의 설명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위와 같은 그의 얘기들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행위자 원인이 행위자의 통제력을 확보해준다는 그의 생각이 참이어야 한다. 이제 이러한 그의 생각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려 한다.

#### 4. 행위자 원인과 행위자의 통제력

행위자 원인을 도입했다고 해서 행위자에게 곧바로 통제력을 귀속시킬 수 있을까? 행위자 원인은 행위자의 통제력을 확보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되는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오키너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음 얘기를 통해 이러한 그의 생각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제 ‘S[행위자]가 e를 야기함’의 예를 생각해 보자. ... 그 사건 e는 확실히 그 행위자의 통제 하에 있다. 그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야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때 그 행위자가 ‘자신이 e를 야기함’을 통제했는지와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한 행위자가 다른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력을 행사함의 사례이다.<sup>20)</sup>

언뜻 보기에, 이러한 오키너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듯하다. 앞서 우리의 예에서처럼, 행위자 A가 행위 의도 e<sub>2</sub>를 야기하는 행위

<sup>20)</sup> O'Connor(1995), pp. 186~7.



자 원인 사건 ‘A → e2’가 발생했다고 해보자. 오코너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자 원인 사건은 행위자 A가 행위 의도 e2를 통제한 사건이다. 그렇다면, 행위자 A가 행위 의도 e2를 통제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었는지 묻는 것은 그야말로 말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sup>21)</sup>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문제는 남아 있다. 오코너의 이 같은 주장이 적절한 것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원인 사건과 행위자의 통제 사건이 동일한 것이거나 전자가 후자의 충분조건이어야 한다. 만일 양자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오코너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행위자 원인의 설명력과 관련된 오코너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그렇다면, 행위자 A가 e2를 야기한 사건은 행위자 A가 e2를 통제한 사건과 동일하거나 전자가 후자의 충분조건일 수 있는가? 양자 사이의 동일성 관계를 의심하는 위더커(D. Widerker)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그가 제시하는 근거를 살펴보자.

어떤 유형의 행위자 원인 사건의 발생에 앞서서 항상 어떤 유형 F의 선행 조건들이 성립한다는 취지의 자연법칙이 있다고 가정하자.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유형의 조건들이 성립될 경우, 어떤 행위자 원인 사건이 회피불가능하게 발생할 것이다. 그것이 회피불가능한 것은, 그것이 야기되었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 오히려 그것은 (1) 그것의 발생이, 관련된 자연법칙과 선행 조건으로 구성된 연접에 의해 함축된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2) 그 행위자가 이러한 연접에 통제력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sup>22)</sup>

21) 물론 이런 식의 반론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이도 있다. 그 예로 Ginet(1997)을 들 수 있다.

22) D. Widerker, “Agent-Causation and Control,” *Faith and Philosophy* 22(2005), p. 91.

이 얘기에서 알 수 있듯이, 위더커는 일종의 결정론과 행위자 원인 사건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 행위자 원인 사건과 행위자의 통제 사건의 동일성을 부정하려 한다. 그의 얘기처럼, 행위자 원인 사건이 자연법칙과 선행 조건의 연접에 의해 함축된다면, 행위자 원인 사건과 행위자의 통제 사건을 동일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더커의 반론은 오코너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코너는 인과적 비결정론을 가정한 상태에서 행위자 원인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만일 오코너가 이러한 반론을 접하게 된다면, 그는 그 결정론적 가정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의 물음을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인과적 비결정론을 가정한다면, 행위자 원인 사건과 행위자의 통제 사건은 동일한가? 또는 전자가 후자의 충분조건일 수 있는가? 이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 일단 오코너가 양자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코너에 따르면, 행위자 원인 사건 ‘ $A \rightarrow e_2$ ’는 어떤 것에 의해 야기되는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의 인과적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A가 다양한 선택지들 중  $e_2$ 를 야기한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A는  $e_2$ 의 원인이고 동시에  $e_2$ 에 대해 통제력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오코너가 행위자 원인 사건을 행위자의 통제 사건과 동일시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행위자 원인 사건 ‘ $A \rightarrow e_2$ ’와 앞선 사건들과의 인과적 단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2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러한 인과적 단절은 행위자 원인의 특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다음과 같은 행위자 원인 사건을 생각해 보자.

어떤 사람 A가 있다.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행위 의도( $e_2$ )를 야기하고 그에 따라 폭력 행위( $e_3$ )

를 야기한다.

이러한 경우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A가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폭력 의도를 야기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우리는 A의 폭력 의도나 폭력 행위와 관련하여 그에게 통제력을 귀속시키기는 힘들 것이다. 그것은 그가 그러한 의도나 행위의 원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다. 분명히 그는 원인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행위자 원인 사건 ‘A → e2’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앞선 사건들과 인과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A에게 통제력을 귀속시키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것은 그가 문자 그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e2를 야기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자.

어떤 사람 A가 있다. 그는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욕구하고 있다. 또한 그는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믿고 있다. 그런데 그는 “뽕꾸뽕꾸”라는 말을 듣게 될 경우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의도를 야기하게 되는 최면에 걸려 있다. 어느 날 그는 “뽕꾸뽕꾸”라는 말을 듣게 된다. 그에 따라 그는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의도(e2)를 야기하고 이어서 폭력 행위(e3)를 야기한다.

이러한 상황 속의 A에 대해서도 통제력을 귀속시키기는 힘들어 보인다. 분명히 행위자 원인 사건 ‘A → e2’는 발생했지만 말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A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 즉, 최면에 의해 의도나 행위를 야기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최면으로 인해 자신의 욕구나 믿음 등의 이유가 자신의 의도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sup>23)</sup> 정신이상이나 두뇌이상으로 인해 자신의 욕구나 믿음을 자신의 의도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행위자에 대해서

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반응하게 될 것이다.<sup>23)</sup>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어떤 행위자에게 통제력을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욕구와 같은 이유들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행위자의 의도나 행위가 그 자신의 믿음과 욕구와 같은 이유에 대한 적절한 반응의 산물인지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자가 의도를 직접적으로 야기했다는 것만으로는 그에게 그 의도에 대한 통제력을 귀속시킬 수는 없어 보인다. 즉, 행위자 원인 사건 ‘A → e2’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을 곧바로 행위자가 통제력을 발휘한 사건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제 어떤 행위자에게 통제력을 귀속시키기 위해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하나의 필요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 23) 여기서 ‘욕구나 믿음 등의 이유가 자신의 의도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의 의미는, 행위자가 자신의 욕구나 믿음 등의 이유와 상반되는 의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위 사례에서 A가 친구들과 관계를 끊고 싶은 욕구와 그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좋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뽕꾸뽕꾸” 최면에 의해 폭력 행사 의도를 야기하게 된다면, 그 의도는 A의 욕구와 믿음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 24) 이 논문의 심사위원 중 한 분은 이러한 사례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말하자면, 이러한 사례들은 “정상적인 의도와 그에 따른 행동”의 예외적인 경우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례를 이용하여 특정 이론 모델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례들이 오코너의 행위자 원인론에 대한 직접적인 반론으로 성립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코너도 이러한 사례들을 비정상적인 경우로 간주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도 행위와 관련된 적절한 이유가 포함되지 않는 행위자 원인 사건의 경우를 행위자의 통제 사건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내가 이러한 사례들을 제시한 이유는, 행위자 원인 사건이 행위자의 통제 사건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이다.

이유 반응 조건: 어떤 행위자 A에게 자기 의도나 그 의도에 따른 행위에 대해 통제력을 귀속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은, A의 그 의도가 A의 이유에 대한 반응의 산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sup>25)</sup>

여기서 물론 ‘이유’란 의도 발생에 앞서서 발생하는 행위자의 욕구나 믿음 등의 정신적 사건들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유 반응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행위자 A의 의도(e2)가 선행하는 정신적 사건들(e1)에 대한 적절한 반응으로 야기된 것이 아닐 경우, A가 e2를 야기했다는 것과 A가 e2를 통제했다는 것을 동일시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오코너도 이러한 ‘이유 반응 조건’을 받아들일까? 3장에서 살펴본 행위자 원인 사건의 발생에 대한 오코너의 설명을 염두에 두면,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설명에는 행위자 원인 사건이 ‘이유 반응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코너의 설명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어떤 행위자가 선행하는 자신의 욕구  $\Theta$ 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 때

---

25) ‘이유 반응성(reason responsiveness)’을 통해 행위자의 통제력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피셔(J. M. Fischer)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나의 시도와는 달리 그는 ‘이유 반응성’을 가지고 행위자 원인론에 대한 반대 논변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그가 행위자의 통제력을 설명하면서 ‘이유 반응성’을 도입하는 이유는 대안적 가능성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행위자에게 통제력을 귀속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데 있다. 그는 대안적 가능성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성립할 수 있는 통제력을 ‘인도적 통제력(guidance control)’이라 부른다. 그에 따르면, 대안적 가능성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행위자가 어떤 이유에 적절하게 반응하여 어떤 행위를 수행한다면, 그 행위자에게 인도적 통제력을 귀속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유에 적절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도덕적 책임의 필요조건으로서의 통제력 귀속에 충분한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피셔의 이러한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유에 적절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통제력 귀속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Fischer(1994), pp. 131~4 및 Fischer & Ravizza(1998), pp. 28~61 참조.

행위했을 충분조건은,

(1) 이 행위에 앞서, 그 행위자는 욕구  $\Theta$ 를 가졌고 그렇게 행위하면 그 욕구를 충족시킬 것이라 믿었다.

(2) 그 행위자의 행위는 그 자신의 자기-결정 인과적 활동에 의해 (부분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활동의 사건 구성요소는 ‘ $\Theta$ 를 지금 여기서 충족시키기 위해 그렇게 행위하려는 행위 촉발 의도를 가지게 됨’이다.[밑줄은 필자의 강조]<sup>26)</sup>

이 설명의 (1)에는 행위자의 욕구  $\Theta$ 와 그에 따른 믿음이 등장한다. (2)에는 ‘ $\Theta$ 를 지금 여기서 충족시키기 위해’라는 구절과 더불어 행위자 원인 사건이 등장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1)과 (2)에 등장하는 욕구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일성이 성립하는 것은 (2)의 행위자 원인 사건이 ‘이유 반응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만일 행위자 원인 사건이 ‘이유 반응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이러한 동일성이 성립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설명에는 행위자 원인 사건이 ‘이유 반응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오코너의 전제 즉, 행위자 원인 사건이 ‘이유 반응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올바른 것일까? 언뜻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그것은 아마도 위의 설명에 나오는 ‘ $\Theta$ 를 지금 여기서 충족시키기 위해’라는 구절 덕분일 것이다. 그 구절은 (2)의 행위자 원인 사건이 (1)의 욕구  $\Theta$ 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보임새가 진짜인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위의 행위자가 무엇 때문에 ‘ $\Theta$ 를 지금 여기서 충족시키기 위해’ 특정 행위 의도를 야기하게 되는지 생각해 보자. (1)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욕구  $\Theta$ 가 그 행위 의도에 의해 충족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

<sup>26)</sup> O'Connor(2000a), p. 86.

라 할 수 있다. 결국 (2)의 행위자 원인 사건이 ‘이유 반응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보임새는 욕구  $\Theta$ 가 특정 의도에 의해 충족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특정 의도와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욕구들은  $\Theta$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앞서 우리는 영화관으로 향하는 행위자 A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행위자 A는 시각  $t_2$ 에 영화를 보러 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e_2$ ), 시각  $t_3$ 에 영화관으로 향한다( $e_3$ ). 물론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기에 앞서 시각  $t_1$ 에 지난 일주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은 욕구와 영화감상을 통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e_1$ ). 오코너에 따르면, 이러한 예에서 행위자 원인 사건 ‘ $A \rightarrow e_2$ ’는  $e_2$ 를 통해  $e_1$ 에 포함되어 있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믿음 덕분에 이유  $e_1$ 에 대한 반응의 산물로 간주된다. 여기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시각  $t_1$ 에 행위자 A에게  $e_2$ 에 의해 충족될 수 있는 여타의 욕구가 있었다고 해보자. 예를 들어,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욕구와 그에 따른 믿음( $e_1'$ ), 영화 공부에 대한 욕구와 그에 따른 믿음( $e_1''$ ) 등. 행위자 A는 이러한  $e_1'$ 과  $e_1''$ 에 포함되어 있는 욕구도  $e_2$ 에 의해 충족될 수 있는 것이라 믿을 수 있다. 그렇다면, 오코너의 이론적 구도 안에서 ‘ $A \rightarrow e_2$ ’는  $e_1'$ 와  $e_1''$ 에 대한 반응의 산물로도 간주되어야 한다. 행위자 A가 시각  $t_1$ 에  $e_1'$ 과  $e_1''$ 을 가지고 있는 한 말이다. 그러나 ‘ $A \rightarrow e_2$ ’가 이러한 모든 욕구와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결국 A가  $e_2$ 에 의해 어떤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는 ‘ $A \rightarrow e_2$ ’가 그 욕구나 믿음 등의 이유에 대한 반응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없다. 즉, ‘이유 반응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편하고도 좋은 방법은 바로 욕구나 믿음 등의 정신적 사건이 행위 의도  $e_2$ 에 인과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시각  $t_1$ 의  $e_1, e_1', e_1''$  중에서  $e_1$ 만이 시각  $t_2$ 의  $e_2$ 의 발생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 $A \rightarrow e_2$ '는  $e_1'$ 나  $e_1''$ 이 아니라  $e_1$ 에 대한 반응의 산물이라는 것을 정당화 하면서, ' $A \rightarrow e_2$ '가 '이유 반응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코너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유로서의 정신적 사건에 그러한 원인적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경우 자신의 행위자 원인론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가 제시한 행위자 원인 사건의 특징을 상기해 보자. 그의 이론에 따르면,  $e_1, e_1', e_1''$  중 어떠한 것도  $e_2$ 의 원인일 수 없다. 또한 행위자 원인 사건 ' $A \rightarrow e_2$ '의 원인일 수도 없다. ' $A \rightarrow e_2$ '는 앞선 사건들과 인과적으로 단절되어 있고,  $e_2$ 의 원인은 A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코너는 정신적 사건의 인과적 영향력을 동원하여 ' $A \rightarrow e_2$ '가 '이유 반응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일 수는 없다. 우리가 '이유 반응 조건'을 통제력 귀속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오코너의 행위자 원인론은 행위자에게 통제력을 귀속시키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27)</sup> 애초에 행위자의 통제력을 위해 도입한 행위자 원인 사건이 결국은 행위자의 통제력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적절한 것이라면, 결국 오코너의 행위자 원인론은 다음과 같은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그는 어떤 행위자가 어떤 의도를 야기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욕구와 믿음 등의 정신적

27) 물론 오코너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행위자 원인 사건이 '이유 반응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위자 원인 사건과 이유 사건의 인과적 단절을 고수하는 한, 그러한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사건이 그 의도에 인과적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으로, 그러한 인과적 영향력을 인정하는 것은 그 자신의 행위자 원인론과 양립할 수 없다. 그의 행위자 원인론에 따르면, 행위자 원인 사건은 앞선 사건들과 인과적으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정신적 사건의 인과적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유 반응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이유 반응 조건’은 행위자에게 통제력을 귀속시키기 위해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조건이다. 결국, 그가 제시하는 행위자 원인은 행위자의 통제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 5. 결론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 오코너는 행위자 원인 사건 ‘ $A \rightarrow e2$ ’에서 행위 의도  $e2$ 의 원인은  $A$ 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사건  $e1$ (욕구와 믿음)이 아니라,  $A$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오코너의 행위자 원인론에서  $e2$ 에 선행하는 정신적 사건  $e1$ 은 행위자 원인 사건 ‘ $A \rightarrow e2$ ’의 원인도 아니고  $e2$ 의 원인도 아니다. 애초에 행위자 원인 사건의 이러한 인과적 단절은 행위자  $A$ 의 통제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4장에서 보았듯이, 행위자 원인 사건과 행위자의 통제 사건은 곧바로 동일시 될 수 없다. 행위자 원인 사건이 ‘이유 반응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한, 그러한 동일시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위자 원인 사건이 ‘이유 반응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신적 사건  $e1$ 이 행위 의도  $e2$ 에 대해 인과적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오코너의 행위자 원인론에 따르면,  $e2$

의 원인은 A이고 ‘A → e2’의 원인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오코너의 행위자 원인론 안에서는 ‘이유 반응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이 봉쇄된다. 결국 오코너의 행위자 원인론은 행위자의 통제력 확보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Chisholm, R.(1964), “Human Freedom and the Self”, in Cary Watson, ed., *Free Will*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p.26-37.
- Clarke, R.(1993), “Toward A Credible Agent-Causal Account of Free Will”, *NOUS* 27:2, pp. 191-203.
- Ekstrom, L. W.(2000), *Free Will: A Philosophical Study*, Boulder: Westview Press.
- Fischer, J. M. & Ravizza, M.(1998), *Responsibility and Control*,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ischer, J. M.(1994), *The Metaphysics of Free Will: An Essay on Control*, Blackwell.
- Ginet, C.(1997), “Freedom, Responsibility and Agency”, *The Journal of Ethics* 1:1, pp. 85-98.
- Goetz, S.(1988), “A Noncausal Theory of Agency”,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49,pp. 303-316.
- Kane, R.(1996), *The Significance of Free Wil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9), “Responsibility, Luck, and Chance: Reflections on Free Will and Indeterminism”, *Journal of Philosophy* 96. pp. 217-240.
- Markosian, N.(1999), “A Compatibilist Version of the Theory of Agent Causation,” *Pacific Philosophical Quarterly* 80. pp. 257-277
- O'Connor, T.(1995), “Agent Causation”, (ed.) T. O'Connor, *Agents*,

- Causes, and Events: Essays on Indeterminism and Free Will*, Oxford University Press, pp. 173-200.
- \_\_\_\_\_ (1996), “Why Agent Causation?,” *Philosophical Topics* 24, pp. 143-158.
- \_\_\_\_\_ (2000a), *Persons and Causes: The Metaphysics of Free Wil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0b), “Causality, Mind, and Free Will”, *Philosophical Perspectives* 14, pp. 105-117.
- van Inwagen, P.(1983), *An Essay on Free Will*,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0), “Free Will Remains a Mystery”, *Philosophical Perspectives* 14, pp. 1-19.
- Widerker, D.(2005), “Agent-Causation and Control”, *Faith and Philosophy* 22, pp. 87-98.

행정안전부

Email: jihohong@korea.kr